

〈2024 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지원(CAST)〉
[IP 자율형] 참여기업 공모 요강

2024. 3. 6.



□ 공모개요

- 공모명 : <2024 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지원(CAST)> 사업
IP 자율형 참여기업 공모
- 공모기간 : 2024. 3. 6.(수) ~ 4. 1.(월) 18:00
- 공모대상 : 한류IP와 연계한 신제품을 기획·개발, 양산, 수출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소비재 분야 국내 중소기업
* 한류IP : 한류 관련 유명 문화예술인 또는 한류 콘텐츠
- 지원규모 : 총 6개 기업 내외, 기업별 45백만원 (예정)
- 지원내용

구분	주요내용
예산 지원	- 한류IP 연계 상품 기획·개발, 홍보, 유통단계 수행비 최대 45백만원 지원
단계별 컨설팅	- 상품개발, 양산, 홍보, 유통, 법률 등 단계별 맞춤 컨설팅 지원 - 워크숍, 품평회 등 전문가 초청 행사 진행
유통·마케팅	- 국내외 B2B박람회 참여 지원 - 사업 공식 채널을 통한 홍보 지원

* 세부 내역은 최종 기업 선정에 따라 조정 가능

○ 공모분야

산업 분야	내 용
패션	의류, 잡화, 악세서리(귀금속 이외) 등
뷰티	미용도구, 미용기기, 색조, 헤어 관련 제품 등
리빙	인테리어 소품, 테이블웨어, 생활 소품 등

- * 공모 분야는 해외 판매 가능한 소비재 제품으로 한정
- * 분야별 2개사 선정 원칙, 단 심사 후 적격 기업이 없을 경우 타 산업 분야에서 추가할 수 있음
- * 의료용품 및 해외배송 불가 제품군은 공모 분야에서 제외함

○ 지원요건

1. 접수 마감일(4.1.) 기준 한류IP와 계약체결이 완료된 기업

- ※ 접수 마감일 기준 계약 미완료 기업의 경우 상호 날인된 이행확약서 등 사전 제출 필수
- ※ 1차 합격기업은 4.8.(월)까지 계약서 미제출 시 2차 심사 제외

2. 한류 IP와 1년 이상 협업하며 연계 및 신제품 기획·개발 범위를 충족하는 기업

- ① 본 사업에서 인정하는 한류IP의 연계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기존 제품에 대한 물리적, 용도적 변경 없이 한류IP를 단순 홍보 모델로 활용하는 것은 불인정
 - 한류IP의 브랜드 및 이미지를 반영한 제품 기획
 - 한류IP의 개인적 역량(취향, 아이디어 등)을 활용한 제품 기획
 - 한류IP의 직업적 역량(활동 산업 분야, 글로벌 경험)에 기반한 제품 기획
- ② 본 사업에서 인정하는 신제품 기획·개발의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참여기업은 중간 점검일('24.7.31.)까지 신제품의 기획·개발을 완료해야 함
 - 자사의 기존 제품의 디자인이나 기능 개선
 - 전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
 - 자사의 제품 계열의 추가 및 확장
 - 자사의 기존 제품의 새로운 사용자나 용도 설정

3. 양산 및 유통·B2B 프로모션 대응 가능 기업

- ① 한류IP 연계 제품을 동일한 품질로 생산할 수 있는 품질관리체계와 주관처와 협의한 납기일에 납품할 수 있는 생산 설비 및 인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
 - * 최초 양산 시 유통 및 프로모션에 필요한 최소 수량 생산 및 확보 필수
- ② 한류IP 연계 제품은 해외 판매 및 홍보에 한류IP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국가별 관련 인증 등록을 필수 진행해야 함
- ③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참여기업은 행사를 통한 해외 판로개척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

4. 본 사업의 기획개발 지원을 3회 이상 받은 기업은 마지막 참여 연도로부터 3년간 지원 불가. 단, 기획개발 지원형 외 후속지원은 가능함

※ 그 외 참여기업 지원신청 부적격대상

-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법인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 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기업은 참여 가능
-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유사 지원사업으로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중도 탈락 또는 사업을 포기한 기업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기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판단할 때 참여제한의 사유가 인정하는 기업

○ 추진일정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업공모	기업선정	한류IP 제품 기획·개발			제품양산	해외 수출 B2B 박람회 참여			사업종료
		지원금 교부 (1차)		중간점검 진행		지원금 교부 (2차)		집행 마감	정산 및 결과보고

* 상기 일정은 사업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접수방법 : 온라인 e-mail 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접수처 : cast@kofice.or.kr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http://www.kofice.or.kr>) 및 본 사업 홈페이지(<http://www.about-cast.kr>) 게시 공모 요강 내 첨부 파일 확인 및 지정양식(신청서)을 내려 받아 작성
- 모든 제출서류를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 압축파일명 : 2024_CAST_자율형_기업명.zip

※ 제출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

※ 마감 시간 이후 접수된 신청서의 경우 접수 불가

※ (주의사항) 공고 내 제출서류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 내용이 미흡하여 제출 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문의처

○ 공식 문의처

- 전화 : 02-3153-1777, 1737

* 운영시간 : 10:00~16:00 (공·휴일 제외)

- 이메일 : cast@kofice.or.kr

○ 제출서류

연번	구분	서류항목	인증처
1	필수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표지 날인 필수	지정양식 활용
2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3		국고·지자체 지원금 수혜내역 (2022. 1. 1. - 2024. 3. 6. 선정내역 포함)	
4		법인·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5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6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7		표준재무제표증명 (2022~2023년) ※ 원본대조 필 확인 도장 날인본 제출 필요 ※ 설립 후 3개월 이상 ~ 3년 미만의 기업: 창업 이후부터 서류 제출 일자 이전 월까지의 서류 ※ 법인사업자: 설립 후 3개월 미만 신규 설립 기업의 경우 법인등 기부등본 사본으로 제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8		국세 완납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9		지방세 완납증명서	정부24
10		한류IP 계약서 사본 ※ 공모 마감일(4.1.) 기준 계약 미완료 기업의 경우 상호 날인된 이행확약서 등을 사전 제출해야 하며 4.8.(월)까지 계약서 제출 필수	해당기업
11	보유 시	기업소개자료(IR 자료 등)	해당기업
12		한류IP 연계 경험 관련 증빙자료	
13		통신판매업 신고증	정부24
1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유통 센터
15		수출 성과 관련 증빙자료 - 직·간접수출실적증명서(2023년) - 2024년 신규 수출 현황 증빙자료 ※ 수출대상국, 계약금액 등 확인 가능한 수출 계약서 사본, MOU 체결 문서 등 거래 증빙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진흥원 등

□ 심사 및 선정

○ 선정절차

공고 및 접수	1차 심사 (서류평가)	2차 심사 (발표평가)	최종 발표
3.6.(수) ~ 4.1.(월) 18:00	4.3.(수) * 2차 심사 대상자 발표: 4.4.(목) 예정	4.9.(화)	4.12.(금)

* 상기일정은 주최·주관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사방법

- 평가위원회 1차 서류 심사, 2차 발표 심사 진행

※ 최종 선발 대상의 1.5배수 선발

※ 신청건수 전체 대상으로 적격심사 진행. 평가 점수 70점 미만인 기업은 자동 탈락

※ 2차 심사 대상자는 KOFICE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발표는 15분 내외 자유양식으로 서류심사 결과 발표와 함께 제출 일자 공지 예정

- 평가위원회에서 예산 범위 내 최종 지원 금액을 결정하며 참여기업 사업 계획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 6개 사외 예비업체를 선정할 수 있음

○ 심사기준

평가지표		내용
구분지표	세부지표	
기업 역량 (30)	재정건전성(10)	- 재무안전성 및 수익성 등 재무건전성 지표
	참여인력 및 조직구성(5)	- 사업 참여인력 적정성 및 전문성 * 제품 기획개발/수출 전담인력(조직), 행정 수행 전담인력 보유 여부
	해외 수출 역량(15)	- 해외수출 의지 및 계획 타당성 - 해외수출인증, 해외수출액, 직접생산증명서 등 지표
한류IP 연계 (40)	한류 사업 이해도(5)	- 한류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 및 전략
	한류IP 연계 기획·개발 역량(25)	- 한류IP 연계 기획 독창성 - 사업 계획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한류IP 계약 조건(8)	- 제품의 해외 판매 및 홍보 관련 한류IP와 계약기간 * '24년 1월 기준 1년 이상
	한류IP 연계 경험(2)	- 한류IP 연계 상품 기획·개발 및 홍보·유통 경험
경쟁력 (30)	제품 시장성(15)	- 제품 차별성·우수성·파급성 - 국내외 온오프라인 유통 프로모션 적합성
	성장 가능성(15)	- 실적 및 성과창출 가능성 - 국내외 시장 진출 전략 우수성

□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지원신청 부적격 대상에 해당할 경우 추후에라도 선정을 취소함
- <2024 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지원(CAST)> 사업 공모 중 1개 공모 유형에만 선정 가능하며, 중복 선정은 불가함
- * <2024 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지원> 사업 공모 유형

공모 유형	
기획개발 지원형(12개사)	IP 자율형(6개사)
	IP 매칭형(6개사)

- 참여기업이 필수 제출서류를 누락하여 주관처의 보완 요청을 받고도 보완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종 선정된 경우라도 선정을 취소함
- 본 사업 공모 신청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 신청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참여기업이 부담함
- 심사에서 선정되지 않은 기업에게는 별도로 결과 통보하지 않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4. 8.(월)까지 상호 날인된 한류IP 계약서가 준비되지 않은 기업은 2차 심사에서 제외함
- 선정기업은 2차 지원금 교부 전 진행하는 중간 점검에 대한 주관처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기획·개발 미완료로 제품 양산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 관련 최신 개정안을 준수하여야 함
- 최종 지원 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2회 분할 지급 예정임

* 지원금 지급 내용

- 1차 지원금 : 선정 후 확정된 지원금의 70% 지급
- 2차 지원금 : 사업 수행 현황 등 중간 점검을 통해 잔여 지원금 30% 지급

* 공모 선정 후 지원금 교부, 자부담 집행, 정산 등은 e나라도움을 통해서 진행됨

- 선정기업은 최종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 운영해야 하며, 임의 변경이 불가함. 사업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상호 협의를 한 후 주관처의 승인 하에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진행 중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해당 사유로

발생하는 손실의 책임은 전적으로 참여 기업에 있음

- 선정기업은 홍보물 제작 시 후원, 주최, 주관 등의 명칭 사용 지침에 따라야 하며 홍보물(포스터, 도록, 영상 등) 제작, 설치 시 주관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사업 수행을 통해 기획·개발한 최종 상품을 협의된 시기 내에 주관처에 제출하여야 함
- 성범죄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종 선정된 경우라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선정기업이 주관처에 보고하지 않은 사고에 의한 민원 또는 추가 피해 발생 시 주관처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사업수행 시 필요한 제3자의 저작권, 산업재산권, 소유권 등 권리사용에 대한 계약/권리관계 증명 사용 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문서를 확보, 관리할 의무가 있고 이로 인한 소송 또는 분쟁 발생 시 전적인 법적 책임을 짐
-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사업비를 교부정산 예정으로 관련하여 필수 협조하여야 하며, ‘24년도 개정된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증빙자료는 보조금 시스템에 전자적 형태로 수신된 정보만 제출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고, 증빙서류가 미비한 사업비 집행 금액은 불인정 처리될 수 있음
- 주관처 지정 회계법인과 월별 집행내역 및 정산 보고서 검토 등 회계 검증 실시해야 함

※ 회계법인 정보 추후 안내 예정

- 주관처는 사업관리를 위한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참여기업은 보완 요구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최대한 성실히 반영하여야 함
- 참여기업이 주관처의 요청을 3회 이상 불응하거나 과업 수행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주관처는 선정을 취소하고, 선정기업은 이에 대한 법적 책임 및 사업 진행과 연관된 금전적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사업 종료 후에도 이력·성과 관리에 필요한 설문, 정보 제공 등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이외 선정기업에 부여되는 의무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별첨] 참여기업 예산 편성 안내

※ 참여기업은 아래의 내용에 따라 예산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미참고 작성에 따른 책임은 참여기업에 있음

○ 사업계획서(예산계획) 작성 요령

사업예산	CAST 사업금액으로 국고지원금(45백만원)과 자부담금(국고의 20% 이상)의 합 ※ 정산 대상 및 이나라도움 통한 예산집행
프로젝트 총예산	사업예산(국고보조금+자부담금)외 기업이 자체적으로 투입하는 예산의 합 ※ 해당 프로젝트의 전체 규모와 향후 한류연계 사업 지속성을 파악하기 위함

- ※ 사업예산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집행 및 정산되어야 하며 정산 시 집행 증빙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함
- ※ 사업예산과 지출 예산의 총금액은 일치해야 하며 자부담금 우선 사용 원칙
- ※ 사업예산 집행계획 작성 시 항목은 일반수용비, 재료비, 일반용역비 3가지로 작성하되, 물량, 단가 등이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예산비목별로 상세히 작성(아래 표 참고)
- ※ 집행내역은 각 예산 항목별로 지정한 증빙서류 제출 필수
- ※ 전자적 형태가 아닌 증빙서류(수기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등) 제출 시 집행 불가하며 추후 불인정 될 수 있음
- ※ 해외거래가 필요한 경우 교부받는 사업예산 외 기업 자체 예산으로 우선 편성권고
- ※ 산출근거 단위는 원화기준이며 진출국가 화폐단위 사용 불가
- ※ 유통단계 지원비 활용 시 명확한 유통처 기재 및 유통처 증빙자료 제출
- ※ 예산계획 재조정 필요시(예산 목/세목/산출근거 변동) 반드시 주관기관(KOFICE)에 사전고지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변경·집행한 예산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예산 편성 기준

- ※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참고
- ※ 사업 선정 이전에 집행한 금액은 사업비로 인정될 수 없음
- ※ 본 사업의 매출액은 반환 의무 없음
- ※ 참여기업 사업예산 편성 필수 항목
 - ☒ 지원금과 자부담금을 나누어 기재, **자부담금은 지원금의 20% 이상을 편성해야함**
 - ☒ 회계검사수수료를 사업비(자기부담금)에 포함하여 편성해야함
- ※ 참여기업 사업예산 편성 불가 항목(지원금 및 자부담금으로 편성 불가)
 - ☒ 인건비·복리후생비, 국내·외 여비(항공료, 체재비, 유류비 등)
 - ☒ 물품구매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 사업 진행시 발생하는 각종 관세 및 수수료
 - ☒ 사업추진비(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등)
 - ☒ 자산취득비/자본적 경비(가구, 전자기기 등 자산으로 남는 물품과 건축, 시설 축조 등 장기간으로 남는 모든 관련 비용)
 - ☒ 경상적 경비(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 공과금 등 단체운영과 관련된 비용)

목>세목	내 용	산정기준 및 단가																									
운영비> 일반수용비	한류 콘텐츠 활용비	• 한류 IP 활용(계약)비용																									
	통번역비	• 사업 수행에 필요한 통역료/번역료 및 감수료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기준 단가 적용 (http://www.hufscit.com/) ※ 외국어→외국어로 번역 등 위 기준 준용 어려운 경우 전문 업체 대행의뢰 사례 및 시장가격 비교검토 등의 방법으로 단가 책정																									
	홍보물 제작비	• 각종 인쇄물을 포함한 홍보용 물품 제작비																									
	회계검사수수료	• 전체 사업에 대한 회계검사 수수료 • 회계검사 수수료는 부가세(VAT) 포함 금액이며 지정 회계법인 기준 <table><tr><th>사업비(국고보조금+자부담금)</th><th>수수료 기준액 (부가세 포함)</th></tr><tr><td>3천만 원 이상</td><td rowspan="2">336,000원</td></tr><tr><td>4천만 원 미만</td></tr><tr><td>4천만 원 이상</td><td rowspan="2">365,000원</td></tr><tr><td>5천만 원 미만</td></tr><tr><td>5천만 원 이상</td><td rowspan="2">505,000원</td></tr><tr><td>6천만 원 미만</td></tr><tr><td>6천만 원 이상</td><td rowspan="2">547,000원</td></tr><tr><td>7천만 원 미만</td></tr><tr><td>7천만 원 이상</td><td rowspan="2">590,000원</td></tr><tr><td>8천만 원 미만</td></tr><tr><td>8천만 원 이상</td><td rowspan="2">632,000원</td></tr><tr><td>9천만 원 미만</td></tr><tr><td>9천만 원 이상</td><td rowspan="2">674,000원</td></tr><tr><td>10천만 원 미만</td></tr><tr><td>10천만 원 이상</td><td rowspan="2">848,000원</td></tr><tr><td>20천만 원 미만</td></tr></table> *위 금액 범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지정 회계법인에 별도 문의 필요	사업비(국고보조금+자부담금)	수수료 기준액 (부가세 포함)	3천만 원 이상	336,000원	4천만 원 미만	4천만 원 이상	365,000원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이상	505,000원	6천만 원 미만	6천만 원 이상	547,000원	7천만 원 미만	7천만 원 이상	590,000원	8천만 원 미만	8천만 원 이상	632,000원	9천만 원 미만	9천만 원 이상	674,000원	10천만 원 미만	10천만 원 이상	848,000원
사업비(국고보조금+자부담금)	수수료 기준액 (부가세 포함)																										
3천만 원 이상	336,000원																										
4천만 원 미만																											
4천만 원 이상	365,000원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이상	505,000원																										
6천만 원 미만																											
6천만 원 이상	547,000원																										
7천만 원 미만																											
7천만 원 이상	590,000원																										
8천만 원 미만																											
8천만 원 이상	632,000원																										
9천만 원 미만																											
9천만 원 이상	674,000원																										
10천만 원 미만																											
10천만 원 이상	848,000원																										
20천만 원 미만																											
운영비> 재료비	제 품 개발비	• 각종 재료비, 라벨·포장·디자인·설명자료 변경제작비, 성능·사양개선, 시험분석 비용 등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																									
운영비> 일반용역비	홍보·유통 관련 용역비	• 전문성이 필요한 홍보(마케팅, 사진, 영상 촬영 및 편집 등)와 유통 업무에 대한 용역계약 비용																									